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69643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696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단53586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주위적 피고, 항소인B대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예비적 피고1. C

2. D

3. E

변론 종결2020. 4. 9.

판결 선고2020. 5. 7.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단535862 판결

주문

1.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90,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예비적 피고 C은 81,648,000원, 예비적 피고 D, E은 각 54,43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 20행의 "U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52호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현재 1심 계속 중이다)."를 "U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52호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1. 16. 위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3행 내지 제5행의 "[이와 같이 주위적 피고(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예비적 피고들(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그리고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위와 같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로 고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종중은, K가 1994. 1. 23.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되었고 종중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K는 연임의결을 거친 바 없으므로 이미 임기가 만료된 K를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다 제1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종중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 선출'에 관하여만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연임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의 연임 여부에 관하여까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K가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종원들의 요청에 의해 K의 연임 여부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2012년경 L, F 등이 K의 회장직 사임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2. 12. 2. 피고 종중 총회에서 L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K가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1차 무효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와 같은 1차 무효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종중의 내부 분쟁이 시작된 2012년경 무렵까지 K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종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화성 세무서장이 2014. 2. 21.자로 발행한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상의 피고 종중의 대표자란에 'K'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는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서는 그 임기가 계속적으로 연임되어 사망 시까지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종중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종중은, 원고가 K가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K에게 계약금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종중의 위 주장은 결국 K에게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피고 종중에게 미칠 수 없다는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는 원고로서는 K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종중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위적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양시호

판사안현진